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년 11월 13일
- 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0일
- 라. 상정일자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제10차 행정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‘과학육성협의회’와 ‘과학육성기금’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 우리구의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과학교육 지원 사업 등 과학인재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(안 제3조)
-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범위 규정(안 제4조)

-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『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』에서 발굴·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,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“과학육성협의회”와 “기금” 관련 기존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고,
 - 안 제3조에서는 과학인재의 육성을 위한 과학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과학육성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과학육성사업 추진 공로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 - 그 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, 원활한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8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1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‘과학육성협의회’와 ‘과학육성기금’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, 우리 구의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과학교육 지원 사업 등 과학인재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(안 제3조)
- 다. 생활과학교실 활성화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의 범위 규정(안 제4조)
- 라.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- 라. 입법예고(2018. 10. 18. ~ 11. 7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임과 의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 내 과학육성을 위하여 과학인재 양성, 과학문화 확산 등의 과학육성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3조(과학인재 양성사업) 구청장은 지역 내 과학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초·중·고교생의 과학교육 지원 사업
2. 학술발표회 및 과학관련 세미나 개최
3.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과학문화 확산사업) ① 구청장은 지역 학생과 주민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임으로써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활과학교실 활성화
2. 과학 축제 및 과학 동호회 지원 사업
3.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
4. 국내외 우수 전람회·전시회 관람 및 유치

5. 주민들의 과학이해증진 사업

6. 과학문화 기반시설 확충 사업

7. 그 밖에 구청장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, 연구기관, 학교, 산업체,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)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표창) 구청장은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매우 큰 공로가 있는 자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